

2024학년도

학생 생활 규칙



송의과학기술고등학교

<목 차>

I. 학생 생활 규칙-----1

제1장 : 총칙

제2장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3장 : 징계

II. 학교 생활 수칙-----4

제1장 : 학생지도

제2장 : 교내 · 외생활

제3장 : 용의 및 복장

제4장 : 출결규정

제5장 :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6장 : 정보통신

III. 시 상-----13

IV. 학생자치회-----14

V. 규칙 제·개정 절차-----19

VI. 부 칙-----21

I. 학생 생활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규칙은 ‘송의과학기술고등학교 학생 생활 규칙’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칙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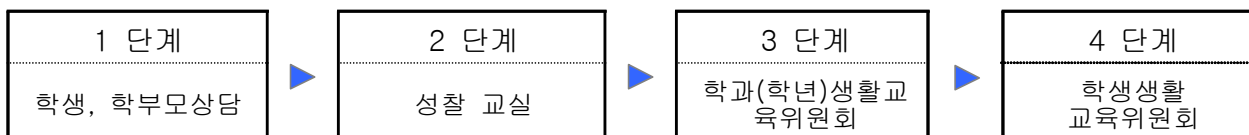
이 규칙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한다. 2022 인권존중의 학교 실현 기본 계획(2022. 2.), 2023 학생 생활규칙 개정 권고 사항 안내(2023.04.13.), 「교원의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공포 및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2023.09.04.)에 근거한다.

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및 생활지도

제4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 ① 학생들의 올바른 생활지도를 위해 학과(학년)에서 주관하는 ‘학과(학년)생활교육위원회’와 학생 안전부가 운영하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두어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무부장, 학생안전부장, 상담교사, 해당 학과(학년)부장, 학생안전부 소속 교사,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학교 상황에 맞게 위원의 구성을 변경할 수 있다.
 - 학과(학년)생활교육위원회는 학과(학년)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담임교사 위주로 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위원 구성은 학과(학년)부장이 학과(학년) 상황에 맞게 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 학과(학년)생활교육위원회에서는 학생들의 올바른 학교생활을 위해서 성찰교실 운영과 상담, 교내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 【학생생활교육 순서】



제6조 【재심의 부의】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에 대해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전학과 퇴학에 대해서만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징 계

제7조 【징계 원칙】

징계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①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 ②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 ③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品行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 ④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 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 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제8조 【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징계 기간은 학교장이 판단하여 달리할 수 있다.)

- ① 학교 내 봉사 및 인성교육 : 1일~8일 기간으로 하되, 일과 후 성찰 교실에서 성찰 과제지를 작성하며 잘못된 행동에 대해 성찰한다.
 - ② 사회봉사: 1일~10일 기간으로 한다. (1일 최대 6시간)
 - ③ 특별교육: 1일~1년 이내 기간으로 한다.
 - ④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⑤ 퇴학 처분: (징계의 마지막 단계)
- ※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 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성찰교실 참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9조 【징계 내용】

- ① 교내봉사 및 인성교육: 일과 후 성찰교실에서 성찰 과제지를 작성할 수 있다. 학기 중 이행하지 못한 잔여 성찰 일수에 대해서는 방학 중 실시할 수 있으며 사회봉사도 가능하다.
 - ② 사회봉사: 일반 봉사활동과 구분하여 처리하며 사회봉사기관, 사회복지기관, 기타 공공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사회봉사 기관으로부터 봉사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사회봉사 기관은 학부모와 학생이 직접 알아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회봉사 확인서는 인정기관(VMS, 나눔포털, 드볼 등)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한다. (1일 최대 6시간)
 - ③ 특별교육이수: 돈보스코학교 또는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지정한 대안교육 위탁기관 및 전문상담기관에 의뢰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출석정지: 출석정지 기간동안 학교장은 해당 학생을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 기관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⑤ 퇴학 처분: 학생이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행동이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퇴학 처분할 수 있다.
- ※ 위 ① ~ ⑤항 외에 흡연에 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은 ⑥항의 내용에 따른다.
- ⑥ 과태료 부과 : 금연 구역에서 흡연 적발 2회 시 남구보건소와 연계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0조 【징계 내용 통보 및 재심 요구】

- ① 징계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학부모(보호자)에게 즉시 그 내용을 등기 우편으로 통보하고 학부모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 ② 전학, 퇴학 조치에 대해서만 학교장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전학, 퇴학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처분(학교장 결재)이 있는 날부터 5일 이내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1회만 가능)

제11조 【징계의 기준】

구분	내 용	징 계						
		성찰 교실	교내 외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전학	퇴학
예 절	① 교사의 정당한 지도 불응 및 지시 거부 또는 교직원에게 불손한 언행	●	●	●	●	●	●	●
	② 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	●	●	●	●
준 법	①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	●	●				
	②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	●	●				
	③ 경찰서에 구속 후 석방된 학생	●	●	●	●			
	④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	●	●
	⑤ 학교 내 각종 문서, 인장, 재증명을 위조한 학생	●	●	●	●	●	●	
	⑥ SNS 도용 및 개인 사진, 동영상 보관 및 도찰	●	●	●	●	●	●	
	⑦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	●	●	●	●
	⑧ 학교장 허락 없이 렌트카, 승용차, 오토바이, 택시, 쿼코드 등을 이용하여 학교 내로 진입 하거나 교외로 타고 다니는 학생(단, 교외는 택시이용 가능)	●	●	●	●	●		
	⑨ 교내외에서 금품 또는 물건을 빼앗거나 절도한 학생(훼손, 파손 등)	●	●	●	●	●	●	●
	⑩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물건을 소지한 학생(총기, 인화성 물질, 도박 도구 등)	●	●	●	●	●		
	⑪ 공공 시설물, 집기류, 교내차량 등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학생(방화 등)	●	●	●	●	●	●	
수업 및 시험	① 수업 태도가 불량하고 수업을 방해한 학생	●	●	●	●			
	② 수업 시간 중 교사 허락 없이 교실 밖으로 나가는 학생	●	●	●	●	●		
	③ 등교 후 무단으로 교문 밖으로 외출(조퇴)하는 학생	●	●	●	●	●		
	④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및 교원 외 강사 등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행위	●	●	●	●	●	●	●
	⑤ 부정행위자 또는 부정행위에 관련된 학생(해당 과목 0점 처리)	●	●	●	●			
근 태	① 미인정지각, 결석, 결과, 조퇴 등을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	●	●	●		
	② 무단가출하여 사회에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	●
	③ 미인정 결석이 30일 이상인 학생	●	●	●	●	●	●	●
약 물	① 약물 또는 음주 행위가 적발된 학생	●	●	●	●			
	② 약물 또는 음주 행위가 3회 이상 상습적인 학생	●	●	●	●	●	●	
	③ 유해약물(주류, 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류 등)을 소지하거나 복용한 학생			●	●	●	●	●
흡 연 (전자 담배 포함)	① 교내·외 흡연으로 적발된 학생(1~2회)	●	●	●	●	●		
	② 흡연행위가 3회 적발된 학생	●	●	●	●	●		
	③ 교실과 특별실 흡연 1회 및 교내외 흡연 행위가 4회 이상 적발된 학생	●	●	●	●	●	●	●
	④ 학교 밖, 길거리, 공공의 장소 등에서 흡연한 학생	●	●	●	●	●		
퇴 폐 행 위	① 도박을 한 학생	●	●	●				
	② 상습적으로 도박, 사기, 불법 상행위 등을 한 학생	●	●	●	●	●	●	●
	③ 학생 출입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	●	●		
	④ 불량 서적(음란서적)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	●	●	●	●		
	⑤ 불량 영화, 영상, 게임, 사이트 등을 이용한 학생	●	●	●	●	●		
	⑥ 과도한 스캔십 또는 건전하지 않은 이성 교제를 한 학생	●	●	●	●	●	●	●
집 단 행 위	① 불법집회 또는 싸움에 참석했거나 가입한 학생	●	●	●	●			
기 타	① 징계 기간 중 학교 교칙을 위반한 학생			●	●	●	●	●
	② 2회 이상 지도를 받거나 징계 미이수자는 가중처벌 한다.	●	●	●	●	●	●	●
	③ 위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 있을 때는 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심의한다.	●	●	●	●	●	●	●
	④ 위와 관련하여 특수교육대상자 및 장애 학생이 피해의 대상이 될 경우 가중 처벌한다.	●	●	●	●	●	●	●

II. 학교 생활 수칙

제1장 학생지도

제12조 【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 ①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 ③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 ④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⑤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 ⑥ 각급 학교의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13조 【진로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 ① 가급적 관련 표준화 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 ② 진로·진학상담실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③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 ④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⑤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⑥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성훈련)을 실시한다.

제14조 【체벌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 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도구에 의한 체벌
- ②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 ③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 ④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⑤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언어적 폭력

제15조(교사의 권리 및 권한)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교육적 상담 및 조언
- ② 교육환경 조성
- ③ 시정 요구
- ④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⑤ 생활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 ⑥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 ⑦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받음.
- ⑧ 학생,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육활동 보호받음.
- ⑨ 피해 교원의 보호 및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요구

제16조(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①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
- ②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훈계·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 ㉡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 ㉢ 고정된 자세로 적정 시간 서 있도록 하기
 - ㉣ 적정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 ㉤ 적정한 수준의 방과 후 지도
 - ㉥ 훼손 시설·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청소 명령
 - ㉦ 교실 밖 분리(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 조치
 - ㉧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조치
 - ㉨ 수업 시간 교실 지정 장소에 물품(휴대전화 등) 보관
 -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에 대해 학생안전부나 학과 교무실에 보관 조치

제17조 【교외 생활지도】

학교는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의 비행을 예방하고 선도한다.

제18조 【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교사가 학부모와 상담을 원하는 경우 학부모는 학교에 방문할 수 있다.

제2장 교내 · 외 생활

제19조 【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0조 【시설 이용 및 환경】

-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소유물】

-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 ②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 ③ 교육 목적상 또는 학교의 안전을 위해 교사는 학생들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고, 그 목적에 위배 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제22조 【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 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 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23조 【폭력 예방】

-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의 제보를 활용할 수도 있다.
 - ㉠ 담임교사·상담교사, (해당)학생의 보호자, 학생안전부 교사
 - ㉡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 ㉢ 시·도 교육청 학교폭력 핫라인
 - ㉣ 학생 고충 신고 상담 전화 1388
 - ㉤ 대검찰청 학교폭력 신고 전화 1301
 - ㉥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 도우미 1388, 02-2100-6000
 - ㉦ 경찰청 범죄 신고 112 등
- 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 ④ 폭력 피해 학생 중 학급 교체 또는 전학을 희망할 경우 담임교사나 학생안전부 교사, 상담교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⑤ 폭력 가해 학생은 부모와 학교의 동의를 얻어 전학을 갈 수 있다.

제24조 【부정행위 예방】

학생들이 학교 시험에 응시하는데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해당 과목은 0점 처리한다.

- ① 다른 학생의 시험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② 서로 이야기를 하거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행위.
- ③ 교과서나 유인물 및 쪽지를 보는 행위.
- ④ 각종 통신 기구(휴대폰, 공기계, 다기능계산기 등)를 휴대하는 행위.
- ⑤ 감독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①, ②, ③, ④항 이외의 어떠한 유사한 행동으로 감독교사로 하여금 부정행위로 의심되게 하는 행위.

제25조 【이성 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 ①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되며, 만약 스토킹이나 성희롱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도움을 청하고 싶은 교사 등에게 도움을 청한다.
- ③ 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제26조 【동아리 활동】

방과 후 수업과 창의적체험활동(동아리활동, 자율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 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생은 창의적 체험활동(동아리활동, 자율활동) 및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

하는 데 노력한다.

- ②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 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학생안전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 ③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 ④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 ⑤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 【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 시간과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 ① 여가 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 ② 여가 시간에는 특별실(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28조 【금연지도】

학교는 학생 자신의 건강과 깨끗한 학교 환경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금연지도를 한다.

- ① 학생은 교내·외에서 절대 금연해야 한다.
- ② 학생이 흡연하는 학생들과 함께 있는 경우 또는 정황상 담배·라이터 소지, 담배 냄새 등은 흡연자로 간주되어 성찰교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조치 받을 수 있다.
- ③ 학생은 흡연과 관련된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적발 시 교사는 담배, 라이터 등을 압수할 수 있다.

제29조 【기타 교내생활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교내생활지도를 한다.

- ① 실내·외화 착용 지도
- ② 등·하교 지도
 - ㉠ 학생은 절대 렌트카, 승용차, 택시, 오토바이, 쿼코드 등을 이용해서 등·하교를 할 수 없다.
(단, 승용차와 택시에 준하여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회복 시까지 예외로 한다.)
 - ㉡ 학생은 교복, 책가방, 운동화 등을 착용 및 소지해야 한다.
 - ㉢ 규칙 위반 시 학생안전부 선생님들이나 학생회 임원 및 운영위원의 지도에 따르도록 한다.
이에 불응할 때에는 「송의과학기술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 ③ 예절(인사) 지도
 - ㉠ 반드시 선생님이나 학부모님, 학교를 방문하는 외부손님을 만나게 될 때는 공손하고 바르게 인사를 한다.
 - ㉡ 학교를 방문하는 학부모님이나 외부손님들의 질문에 공손하게 대답하여 안내하고, 목적지까지 예의 바르게 안내하도록 한다.
- ④ 질서 지도
 - ㉠ 실내·외에서는 침을 뱉지 않도록 한다.
 - ㉡ 매점을 이용할 때는 음식물을 반드시 매점 주위에서 해결하여 뒤처리를 깨끗이 하고, 음식물을 실내로 반입하지 않도록 한다.
 - ㉢ 학생은 교무실이나 특별실 등을 출입할 때 복장을 단정히 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
 - ㉣ 학생은 화장실 이용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학생은 융합관, 창의관 1층에 위치한 교사용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다.

- 남·여가 지정된 화장실을 사용해야 한다.

⑤ 급식소 지도

㉠ 자신이 사용한 급식 판이나 컵, 수저, 젓가락, 남은 음식물 등을 자신이 일정한 장소에 반입하여 식사 장소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제30조 【학급 내 봉사활동】

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주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급환경 정돈, 출결사항 점검,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쓴다.
- ② 청소구역의 청소 상태를 확인한다.
- ③ 학급 비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 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 ④ 소정의 등교 시간보다 일찍 등교하여 활동에 임하고 종례 후 정리 정돈한다.

제31조 【기타】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교사의 임장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①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갖고자 할 때
- ②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32조 【교외생활】

학생은 교외 생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 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 ③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④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⑥ 교통 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⑦ 주류,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 ⑧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 취업을 금한다.

제33조 【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 시간
- ② 학생(자녀)의 교외 생활 중 교우관계
-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3장 용의 및 복장

제34조 【용의 및 복장 규정】

- ① 학생의 용모와 복장은 단정해야 한다.
- ② 학교에서 지정한 교복을 단정히 입어야 한다.
- ③ 용모에 있어서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 ④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 ⑤ 실내화와 실외화는 구분하여 착용한다.

제4장 출결 규정

제35조 【출결사항】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승낙을 받아 할 수 있다.

가. 결석일수의 산정

- 1)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결석으로 처리한다.
- 2)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 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기간
- 5)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부, 모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3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경조사 일수에 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3) 병원 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 장애 학생이 결석한 경우
-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라. 미인정 결석

-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4)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 5)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 6)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마. 기타 결석

-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바. 출결부호 표기 요령

결석(지각, 조퇴, 결과)			
질병	미인정	기타	인정
∅	/	☐	ㄱ

사. 나이스 출결기록 우선순위

- (1) 같은 날에 미인정과 질병이 동시에 있는 경우
 - ① 질병을 우선으로 기록
예시) 미인정지각+질병조퇴====>질병조퇴로 기록
미인정지각+질병결과====>질병결과로 기록
 - ② 단, 미인정조퇴 또는 미인정결과가 포함되는 경우는 미인정으로 기록
예시) 질병지각+미인정조퇴====>미인정조퇴로 기록

질병지각+미인정결과====>미인정결과로 기록
※ 질병에 대한 증빙서류(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학부모확인서, 담임확인서, 보건실 입실증)가 있는 경우

(2) 미인정(질병)

- ① 같은 날에 미인정지각, 미인정결과, 미인정조퇴가 모두 있는 경우
: 미인정조퇴로 기록
- ② 같은 날에 미인정지각, 미인정결과가 있는 경우
: 미인정지각으로 기록
- ③ 같은 날에 미인정결과, 미인정조퇴가 있는 경우
: 미인정조퇴로 기록
- ④ 같은 날에 미인정지각, 미인정조퇴가 있는 경우
: 미인정조퇴로 기록

아. 나이스 특기사항 기록(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63쪽 참조)

- (1) 미인정결석, 질병결석인 경우
: 결석 7일 이상인 경우 사유를 입력함
- (2) 기타결석인 경우는 사유를 입력함
- (3) 미인정지각(결과, 조퇴), 질병지각(결과, 조퇴)인 경우
: 21회 이상인 경우 주된 동일사유에 대하여 입력

자. 질병결석(지각, 결과, 조퇴)에 증빙서류

- :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 ①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처방전, 학부모 확인서, 약봉투(약제비 계산서 포함) 등 가능
- ② 상습적이지 않은 질병결과는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보건실 입실증 등 가능

차. 모든 출결 관련 증빙서류는 학년말에 담임교사가 수합하여 교무지원부로 제출

카. 기타 논쟁이 되는 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논의 후 학교장이 정함.

제5장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36조 【현장실습 준수사항】

- ① 기업체나 행정관서에서 현장실습을 수행한 때에는 사규나 관서의 규칙 등 제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 ㉠ 기업체(관서)의 복무규정을 엄수한다.
 - ㉡ 현장실습의 장을 학교 수업의 연장으로 여기고 무단이탈, 무단결근 등 학생의 본분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 기업체에서 현장실습 중 학교의 허가 없이 타 기업체로 이동하지 못하며 실습일지 및 근무상황 보고서를 학교장이 요구하는 시기에 제출해야 한다.
 - ㉣ 현장실습 중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 ㉤ 각종 자격시험 등을 응시하고자 할 때는 기업체의 장에게 허가를 얻어 참여한다.
 - ㉥ 현장실습 기간 중 출근은 학교 출석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제37조 【학부모 협조 사항】

- ① 현장실습 기간 중 기업체(관서)의 기물파손 등 물적 손실뿐 아니라 자녀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연대 책임진다.
- ② 자녀의 현장학습 기간 중 이상한 점이 인지될 경우 반드시 학교에 통보, 함께 협의한다.

제6장 정보통신

제38조 【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39조 【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교내에서 휴대전화는 학급별로 수거 가방을 준비하여 조회 시간에 담임교사가 일괄 보관한 후 종례 시간에 돌려준다. 일과시간 중 휴대폰이 꼭 필요한 경우 담임선생님의 허락 후에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
- ②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III. 시 상

제40조 【종류】

본교 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학년협의회 또는 교직원 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 단, 특별상은 예외로 한다.

- ① 학력부문- 교과별 학업우수상
- ② 모범부문- 표창장, 선행상, 봉사상, 효행상
- ③ 근면부문- 3년 개근상, 3년 정근상
- ④ 특 별 상- 교내·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한다.

제41조 【시기】

시상은 졸업식, 학기 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42조 【외부로부터의 시상】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상신 한다.

제43조 【학력부문】

학력상: 매 학년말 학업 우수상을 각 교과별로 해당 학년 최우수학생에게 시상하며, 동점자가 있으면 생년월일이 낮은 학생에게 시상한다.

제44조 【모범부문】

모범부문의 시상은 교내봉사활동 이상의 징계 사실이 없는 자에게 수여한다.

- ① 표창장(공로부문): 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투철한 국가관과 애교심이 있어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 ② 표창장(효행부문): 충효 정신이 뚜렷하고 웃어른에게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 ③ 표창장(선행부문): 예절과 행실이 바르고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 ④ 표창장(봉사부문): 봉사 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봐 준 행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 ⑤ 기타: 위 각 항 해당자 중 공적상 구별이 어려운 경우, 각 항 수상 대상자의 수를 2명 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45조 【근면부문】

개근 및 정근상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전입생이나 상·기고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 ① 3년 개근상: 3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 ② 3년 정근상: 3개년에 걸쳐 결석 3회 또는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3회 이내인 자에게 수여한다.

제46조 【특별상】

교내·외 행사가 기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학급 또는 학생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47조 【선행부문】

각 학급에서는 수시로 선행 학생을 추천 표창할 수 있다.

IV. 학생자치회

제1장 학생자치회 규정

제48조 【회원】

학생자치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49조 【권리 및 의무】

학생자치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50조 【금지활동】

학생자치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성향을 띤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51조 【협의·지원사항】

학생자치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생연구활동 ②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 ③ 각종 봉사활동 ④ 학교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재 및 지원활동
- ⑤ 감염병 예방활동

제52조 【승인】

학생자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53조 【학생회 임원】

학생자치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생자치회 회장 1인, 부회장 1인]
- ② 각부의 부장 1인, 차장 1인

제54조 【부서】

학생자치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 ① 총무부: 제반 사업의 계획, 서무, 문서, 회계 및 기타 사항
- ② 문예부: 학·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 ③ 체육부: 회원의 심신 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 ④ 환경부: 학교 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 ⑤ 종교부: 각종 종교 행사에 관한 업무
- ⑥ 학습부: 학내 면학 분위기 조성에 관한 제반 사항
- ⑦ 운영위원회: 인권 친화적 학내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제55조 【직무 및 선출】

- ① 학생자치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㉔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 ②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㉔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며, 각 부서의 장은 회장이 학교장에게 지명 보고한다.
 - ㉔ 회장 및 부회장은 행실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 선출한다.
 - ㉔ 각부 부장은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천 대상자의 자격을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56조 【학급 임원】

- ① 학급 임원은 반장, 부반장, 대의원으로 한다.
- ② 학급 임원은 품행이 단정하고 책임감이 있으며,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선출한다.
- ③ 학급 임원은 3월 중에 학급 회의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하며 학교장이 임명한다.
 - 반장은 후보 중 최다 득표자로, 부반장은 차점자로, 대의원은 3위 득표자로 한다.
- ④ 입후보자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학급 임원의 자격 기준에 합당한 자를 학급 회의에서 재선출하거나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임명한다.
- ⑤ 학급을 운영하기 위해 서기, 총무, 학습, 문예, 전산, 생활, 환경, 체육, 종교부장 등을 담임교사의 재량으로 임명한다.
- ⑥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학급 사정상 전출, 징계 등 부득이한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학기 중에 재선출한다.)
- ⑦ 학급임원(반장·부반장·대의원)이 임기 중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학교생활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로 지도를 받았으나 개선이 없을 시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활동을 정지시키거나, 임명을 취소하고 재선출하여 임명한다.

제57조 【운영위원】

학교의 규율과 질서유지를 위해 운영위원을 둔다. 선발은 재학생 중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학기별 1회 선발하고, 학생안전부에서 관리 감독한다.

제58조 【방송부원 및 환경지킴이】

- ① 방송부원은 품행이 단정하고 방송활동에 관심이 많은 자로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담당 교사가 선발한다.
- ② 환경지킴이는 품행이 단정하고 봉사 정신이 뛰어난 자로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담당 교사가 선발한다.

제59조 【봉사활동 인정】

학생자치회 회장단과 임원, 운영위원, 방송부원, 환경지킴이의 1년간 활동 시간을 누적하여 교내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한다.

제60조 【대의원회】

학생자치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 ① 구성
 - ㉔ 학생자치회 회장, 부회장 및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 ㉔ 학생자치회 회장은 의장이 된다.

② 기능

- ㉠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 보고의 승인
- ㉡ 예산심의
- ㉢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 ㉣ 학생자치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안 제출
- ㉤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회의

- ㉠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 정기총회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 ㉢ 대의원회의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61조 【예산편성】

학교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하여 집행위원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후 1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통보하고, 대의원회에서는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2조 【결산】

회장은 회계연도 만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학생회장 선거 규정

제63조 【회장단 선출】

- ① 전 회원이 참가하여 직선제로 선출한다.
- ② 회장단(회장-부회장)은 동반 후보로 하고, 선거 결과 최다 득표 조가 학생회장과 부회장이 된다.

제64조 【후보자의 자격】

회장단 후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지닌 학생으로 한다.

- ① 품행이 바르고 통솔력이 있는 학생
- ② 담임선생님의 추천을 받은 학생
- ③ 후보 등록일까지 정근 또는 개근인 학생(예: 1학년 때 정근이고, 2학년 때도 정근이면 후보자의 자격이 있음. 단, 질병 결석은 제외)
- ④ 회원(재학생) 5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학생

제65조 【선거권 제한】

휴학 중이거나 징계 중인 학생에 한해서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66조 【선거 시기】

신임 회장단 선거는 전임 회장단 임기 만료 전 30일 이내, 즉 10월 2일부터 31일 이내에 한다.

제67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대의원회의에서 호선에 의해 10명 이내로 임명하고, 위원장은 학생회장으로 한다.

㉡ 후보로 등록된 회장, 부회장은 제외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 개회 및 의결 :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선거일 공고 :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일 5일 전까지 선거일시를 공고한다.

㉢ 선거인 명부 : 선거인 명부는 학생회 회원 명부로 한다.

③ 후보자 등록 절차

㉠ 회장은 2학년, 부회장은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후보자가 된다.

㉡ 후보자의 등록은 선거 공고 마감 익일부터 4일 이내에 등록신청서 1통, 생활기록부 사본 1통, 회원 50명 이상의 추천서와 담임교사의 추천서를 갖추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다.

㉢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한다.

㉣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등록 마감 후 1시간 이내에 후보자 명단을 공개한다.

㉤ 담임교사는 입후보 희망 학생에게 입후보자 자격요건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한다.

④ 투표와 개표

㉠ 선거관리위원장이 날인된 투표용지를 준비한다.

㉡ 지정된 투표소에 선거관리위원 좌석, 투표용지 교부, 기표 장소 투표함의 위치, 참관인의 좌석을 배치한다.

㉢ 선거관리위원장과 참관인이 참관하고 지명된 선거관리위원 3명 이상이 개표한다.

제68조 【선거 운동】

① 후보자등록을 마친 후 교내에서 투표 전일(24:00)까지 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선거운동에 사용할 피켓과 선거 벽보물에는 후보자 기호, 사진, 성명, 공약, 호 등을 게재할 수 있다. (단, 피켓과 벽보의 크기와 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금품수수, 명백한 흑색선전은 불법 선거운동으로 간주,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후보자 등록과 당선을 취소시킬 수 있다.

⑤ 선거운동 기간일지라도 입후보자가 교칙에 위배 되는 행위를 했을 시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입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한다.

제69조 【소견 발표회】

① 동일 장소, 날짜에 합동 소견 발표회를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각 후보마다 1인의 찬조 발표를 할 수 있다.

③ 소견 발표와 순서는 기호순으로 한다.

- ④ 소견 발표자의 소견 발표 제한 시간은 각 후보자마다 8분 이내, 찬조 연설자는 6분 이내로 한다.
- ⑤ 소견 발표자는 회장, 부회장 입후보자, 찬조 발표자는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각 입후보자의 추천자로 한다.
- ⑥ 학생자치회 회장·부회장 입후보자는 반드시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시 사유를 소견 발표 2시간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에 연락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 없이 소견 발표에 참여하지 않을 때에는 결격사유로 간주하여 입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70조 【당선인 결정】

- ①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 최다 득표한 1개 조를 당선 조로 결정한다.
- ② 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 결선투표를 하여 결정하며, 결선투표는 24시간 이내에 실시한다.
- ③ 회장단 입후보자가 단일후보일 경우,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무투표 당선을 확정 공고한다.

제71조 【당선공고】

당선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선거관리 위원장은 즉시 공고한다.

제72조 【재선거 및 보궐선거】

- ① 선거 무효 및 당선무효의 사실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재선거를 실시한다.
- ② 학생회장이 궐위 시에는 1개월 이내에 회장단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당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부회장의 궐위 시에는 학생회장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 2/3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④ 학생회장이 명백한 학교생활 규칙을 위배하여 징계를 받거나 학교의 품의를 훼손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그 직위를 박탈하고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73조 【임원의 임기】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당선 후, 차기 년도 3월 2일부터 학년 말일까지(1년)로 한다.

V. 규칙 제·개정 절차

제74조 【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생생활 규칙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5조 【적용 범위】

‘학생생활 규칙’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76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학생생활 규칙’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 규칙 중에서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학생 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제77조 【위원회 운영】

- ① 본교의 학교생활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규칙 제정·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 위원의 수가 반드시 재적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8조 【개정안 발의】

-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칙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 재직 교원의 과반수
 - ㉢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 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9조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0조 【심의 및 결정】

-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81조 【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생생활규칙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82조 【기타】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주적 관행을 참고로 하여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Ⅵ.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정일】** 이 개정안은 2005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개정일】** 이 개정안은 2006년 03월 02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개정일】** 이 개정안은 2011년 07월 21부터 시행한다.

제5조 **【개정일】** 이 개정안은 2015년 03월 01부터 시행한다.

제6조 **【개정일】** 이 개정안은 2016년 04월 02부터 시행한다.

제7조 **【개정일】** 이 개정안은 2017년 04월 05부터 시행한다.

제8조 **【개정일】** 이 개정안은 2021년 4월 01부터 시행한다.

제9조 **【개정일】** 이 개정안은 2022년 4월 20부터 시행한다.

제10조 **【개정일】** 이 개정안은 2024년 3월 01부터 시행한다.